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 의무화제도 폐지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06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420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 폐지(안 제21조제10항, 안 제26조제4항, 안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안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2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420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9. 24.
3. 회 부 일 : 2024. 0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일시·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 폐지(안 제21조제10항, 안 제26조제4항, 안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안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행 중 운행기록증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안 제26조제4항, 안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안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⑨ (생략) <u>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u>1. 운행 일시·목적 및 경로</u> <u>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u> <u>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⑪ ~ ⑬ (생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⑨ (현행과 같음) <u><삭제></u> ⑪ ~ ⑬ (현행과 같음)

[illegible]

현행	개정안
20의6. ~ 41. (생략)	20의6.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u>	<삭 제>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1조제10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¹⁾을 말함)을 영위하는 운송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자는 ① 운행 일시·목적 및 경로, ②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 자격,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²⁾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운행기록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4조의5제4항³⁾에 따라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 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시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및 감차(3차)⁴⁾, 운수종사자가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1. 자동차등록번호
2. 운송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일시
4. 탑승자 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 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 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의5.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격정지(5일)⁵⁾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 개요(「여객차법」 제21조 등) >

- (개요) 전세사업자는 지역조합에 ①**운행정보*** 신고 후 운행정보가 기재된 ②**운행기록증을 발급** 받아 차량에 ③**부착(전자매체 가능)하고 운행할 의무**
 - *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기사 이름 및 운전자격, 차량번호, 계약 일시 및 당사자, 탑승자 수
- 관할관청 및 전세버스사업자의 전세버스 기사·차량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여객차법」 개정 2015.1)
- (절차) 사업자가 시·도 조합에 **운행정보 신고 및 발급 신청**(온·오프라인) → 시·도 조합이 **운행기록증 발급*** → 기사는 차량에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 * 시·도 조합은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자료를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 의무
- (위반시 제재) 운행정보를 신고 않거나 운행기록증 미부착 상태로 운행 시 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및 감차(3차)**
 - * 버스기사가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자격정지 5일

*자료 : 국토교통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2.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6)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의2	자격정지 5일

< 운행기록증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2. 6. 8.>			
[운행정보신고서 접수번호]			
운행기록증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이름	
③ 운행일시	. . . 부터 . . . 까지		
④ 운행목적	☐ 통근 ☐ 통학 ☐ 관광 ☐ 기타()		
⑤ 운행경로			
⑥ 운수종사자 이름 (버스운전자격증번호)			
⑦ 자동차등록번호			
⑧ 계약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			

210mm×150mm[백상지 (80g/㎡)]

현행 운행기록증 제도는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을 금지⁶⁾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명의를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⁷⁾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⁸⁾한데 대하여,

- 6)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양성화하는 개별사업권을 요구하지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개별사업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김윤구 기자, “전세버스 확 줄인다…불법 지입차량은 등록취소(종합)”, 연합뉴스, 2014.2.3.
<https://www.yna.co.kr/view/AKR20140129226251003>, 최종검색일 2024.10.2.)
- 7)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임.
- 8) <버스운송사업 교통사고 건수(2010 ~ 2012년 평균)>

전세버스 업체에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의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전세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5년도에 도입되었음⁹⁾.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기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¹⁰⁾ 부착이 의무화¹¹⁾¹²⁾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운송사업	교통사고(건)	대형사고(건)	대형사고 비율(%)
시내버스	6,120	9.4	0.15
시외버스	1,140	10.3	0.89
전세버스	1,152	16.7	1.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0467호, 2014.5.2. 발의, 조현룡의원대 표발의) 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 9) 이 제도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행정보를 기록한 운행기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조합에 제출한 후, 운행기록증 2부를 발부받아 1부는 차량에 부착하고 1부는 보관하게 함으로써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0467호, 2014.5.2. 발의, 조현룡의원대 표발의) 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10)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 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2. "운행기록"이란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의 기록을 말한다.

11)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전자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

전세버스가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지를 현장에서 지자체가 종이로 작성된 운행기록증을 확인하여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매년 운행기록증을 발급·인쇄하여 기사에게 전달해야 하나, 차고지와 사무실의 거리가 멀고 다른 지역 운행이 잦은 전세버스 업종 특성상 운행기록증 부착의무는 업계에 행정적인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증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정보 중 일부(회사명, 기사자격증명, 자동차번호)는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차량 내·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행 일시·목적·경로는 DTG 및 일반적으로 전세버스 외부에 부착된 종이·전광판에 적힌 목적지 정

12)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전세버스의 업종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대수 대비 운행기록 제출률은 최근 3년간 2021년 88.3%, 2022년 100%, 2023년 96.1%, 2024년 9월 기준 91.6%로 높은 편임. 전세버스의 경우는 전세버스 안전 등급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전세버스공시제도’의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운행기록 제출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률이 준수한 편으로 보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 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③ ~ ⑥ (생략)

보로 간접적 파악¹³⁾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운행기록증 구성 항목 및 he 규정에 따른 공개 여부 >

운행기록증 구성 항목	공개 여부		관련 규정
1) 회사명·대표자명	○	회사명 표시 의무(차량 외부)	「여객차법」 제17조
2) 운행 일시·목적·운행경로	△	종이·LED전광판에 표시(차량 외부)	법적 의무는 아니나 이용객 차량 식별 용이성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차량 외부에 표시(업계 관행)
		운행기록정보(DTG) 공개 의무 (교통행정기관 요청 시)	「교통안전법」 제55조
3) 기사 이름· 종사자격증 번호	○	종사자격증 게시 의무(차량 내부)	「여객차법」 제24조의2
4)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번호판 부착 의무(차량 외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 계약일시	X	-	-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전자식 운행기록계(DTG)는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¹⁴⁾로, 실물 운행기록증을 대신하여 신고된 상황과 달리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보임.

한편,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지입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1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이용객의 차량 식별 용이성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14)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DTG 기술의 발전으로 GPS를 통한 차량관제 시스템(운전이력 및 운행지역과 거리로 인한 동선 확인 포함) 및 무선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고 현재는 자동전송을 통해 운행에 대한 DB관리가 철저히 되어있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며¹⁵⁾,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의 시행으로 지입차량의 개별영업 문제도 대부분 근절된바¹⁶⁾, 동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은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이를 통한 불법영업 및 지입차량의 현장 단속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버스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1조제10항은 운행기록증 발부만이 아니라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¹⁷⁾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21조제10항을 전부 삭제하고 있어 신고의무까지 삭제됨.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운행기록을 신고하는

15) 전세버스 업종 특성상 성수기 시 대부분 장거리 운행이 많아 차고지 박차율(평균 47%)이 절반에 못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부분 운행기록증 발급을 위해 차고지와 사무실까지 거리가 상당수 떨어져 있어 운행기록증 발급을 위해 사무실을 경유(공차운행)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사무실 발급 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거나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경우 대부분이라는 설명임.

16) 2015.01.01.이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라서 개별영업 및 개별수수에 대한 영업형태가 거의 사라짐.

* 현금영수증은 지입운전자가 아닌 전세버스 사업자가 발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운임을 받았을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자료 : 전세버스연합회

17)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2년동안 보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②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절차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외부에 나가 있는 차량과 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등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단속 공무원의 운행 기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버스 수요·공급 불균형, 시장경쟁 심화로 야기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제¹⁸⁾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동 운행정보 신고를 활용¹⁹⁾하고 있어, 신고의무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실물 운행기록증의 부착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국토교통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실물 운행기록증 부착의무는 전국단위의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2년마다 전세버스의 수급조절(신규등록·증차 허용) 시행 여부를 심의·의결

- 현행 제5차 수급조절 기간(2022.12~2024.11)이 2024.11.30일자로 기간만료 예정임에 따라전세버스 수급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개최(11월 중)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9) 수급조절제 시행을 위한 시장상황 분석 시 운행정보 신고 데이터를 활용 중으로, 운행정보 신고의무 삭제 시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자료 : 국토교통부)

장거리 영업이 많고 운행경로가 승객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수단(운행정보 신고기록 확인 등)으로 불법운행 점검·관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운행기록증 부착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수용이 가능함.

다만, 운송사업자의 차량·기사 관리, 단속 공무원의 운행기록 점검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제 시행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운행정보 신고의무는 존치가 필요함.

(전세버스연합회)

전세버스 지입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전무함. 또한, 운행기록증 부착을 통한 안전관리는 효과가 미미하며 전세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DTG를 통해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 등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운행기록증의 종이증명서 발급은 첨단 IT 및 AI 시대를 퇴보시키는 아날로그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사료됨.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각 업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운행일보가 운행기록증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디지털 형식의 소형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식 및 QR코드 방식 등의 대안은 존재하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장비 설치에 고비용이 발생함.

아울러,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됨(2015.1월 이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있는바, 지입차량의 개별영업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